

청주지방법원 2022. 9. 15 선고 2022가단5179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국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8. 25.

판 결 선 고 2022. 9. 15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[D생, 청주시 상당구 E]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. 9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위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. 22.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85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청주시 상당구청의 과세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주식회사 F에게 2018. 3. 13. 1억 원을, 2018. 10. 30.에 8,550만 원을 각 대출하였고, C이 위 각 대출금채무를 1,650만 원, 1억 1,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, 위 회사와 C이 대출원리금 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였고(대출만기가 2021. 3. 12. 및 2021. 1. 29.이다), 남은 채무액이 C의 위 각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실, C이 2021. 1. 22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8535호로 2021. 1. 9.자 매매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당시 C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채무자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인바, 이는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(피고가 2022. 5. 11.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).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권노을